

■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[별표 1] <개정 2025. 10. 31.>

영향진단의 구체적인 실시 시기(제3조 관련)

구분	영향진단의 대상	영향진단의 실시 시기
1. 도시 및 농 어 촌 의 개발	가.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2조 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 지구조성사업	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 수립 완료 전
	나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	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제1항에 따른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
	다. 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	「농어촌정비법」 제9조제2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수립 완료 전
	라. 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	「농어촌정비법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 수립 완료 전
	마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	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2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완료 전
	바. 「도시개발법」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	「도시개발법」 제17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
	사.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	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계획 수립 완료 전
	아.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	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 수립 완료 전
	자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여객자동차	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8조제1항에 따른 터미널의 공

	차터미널사업	사계획 수립 완료 전
	차.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 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사업	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·운영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
	카. 「주택법」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 조성사업	「주택법」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
	타. 「택지개발촉진법」 제2조 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	「택지개발촉진법」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 계획 작성 완료 전
	파. 「학교시설사업 촉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시설 사업	「학교시설사업 촉진법」 제4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작성 완료 전
	하.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	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12조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
2.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	가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개발사업	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
	나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개발사업	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
	다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다목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사업	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
	라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	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

		법률」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의 개발사업	률」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
		마.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조성사업	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
		바.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	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
3. 에너지 개발	가.	「광업법」 제3조제2항에 따른 광업 중 광물의 채굴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	「광업법」 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굴계획 수립 완료 전
	나.	「송유관 안전관리법」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송유관의 설치공사	「송유관 안전관리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 수립 완료 전
	다.	「전기사업법」 제2조제16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설치사업	「전기사업법」 제61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 수립 완료 전
	라.	「전원개발촉진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(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)	「전원개발촉진법」 제5조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 완료 전
	마.	「한국가스공사법」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가스사업	「한국가스공사법」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가스사업 실시계획 수립 완료 전
4. 항만의 건설	가.	「신항만건설 촉진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	「신항만건설 촉진법」 제8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 수립 완료 전
	나.	「어촌·어항법」 제2조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어항	1) 지정권자가 시행하는 경우: 「어촌·어항법」 제19조제1

	시설의 건설사업 또는 어항 개발사업(같은 법 제2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)	항에 따른 어항개발계획 수립 완료 전 2) 지정권자가 아닌 자(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외한다)가 시행하는 경우: 「어촌·어항법」 제23조제2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 계획 수립 완료 전 3) 지정권자가 아닌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경우: 「어촌·어항법」 제23조제3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
	다. 「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	「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
	라. 「항만법」 제2조제7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	「항만법」 제10조제1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수립 완료 전
5. 도로의 건설	「도로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	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제1항에 따른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
6. 수자원의 개발	「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에 따른 댐의 건설사업	「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1항에 따른 댐건설에 관한 실시계획 수립 완료 전
7. 철도 및 도시철도의 건설	가. 「도시철도법」 제2조제5항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사업	「도시철도법」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
	나. 「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	「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

	유지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	지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
8. 공항의 건설	「공항시설법」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	「공항시설법」 제7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수립 완료 전
9. 하천의 이용 및 개발	「하천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서 실시하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(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또는 제2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	가. 하천관리청(「하천법」 제2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포함한다)이 시행하는 경우: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 수립 완료 전 나.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: 「하천법」 제30조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
10. 공유수면의 매립	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사업	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수립 완료 전
11. 관광단지의 개발	가.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	「관광진흥법」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작성 완료 전
	나. 「관광진흥법」 제2조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조성사업	「관광진흥법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 작성 완료 전
	다.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사업	1)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의2에 따른 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: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조성계획 입안 완

		료 전 2)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3항에 따른 민간공원추진자가 시행하는 경우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제1항에 따른 도시·군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
	라. 「자연공원법」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원사업	「자연공원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계획 결정 전
12. 특정지역의 개발	가.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	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9조제1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
	나. 「기업도시개발 특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 개발사업	「기업도시개발 특별법」 제12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
	다. 「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사업	「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수립 완료 전
	라. 「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	「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」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 완료 전
	마. 「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	「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

	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주한미군시설사업	법률」 제4조에 따른 국방·군사시설 사업계획 작성 완료 전
	바. 「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9호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사업	「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23조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 수립 완료 전
	사. 「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16조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	1) 시행자가 「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: 같은 법 17조제7항에 따른 사업계획 작성 완료 전 2) 시행자가 「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16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: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 수립 완료 전
	아. 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	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
	가.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4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조성사업	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련지구조성계획 수립 완료 전
13. 체육시설의 설치	나.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(같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	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작성 완료 전

	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의 경우만 해당한다)	
14. 국방·군 사 시설의 설치	「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국 방·군사시설사업	「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른 국 방·군사시설사업계획 작성 완 료 전
15. 임도 설 치 및 임 산물의 굴 취	가.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 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사업	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4항에 따 른 설계 완료 전
	나.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 에 따른 임산물의 굴취	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에 따 른 허가를 받기 전
16. 그 밖의 건설공사	위 각 호에 포함되지 않는 건 설공사	해당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 립 완료 전